



산재보험의 법률상담 1

박 필 수 우리 협회 고문

근대적인 산업의 발달에 수반하여 유감스럽게도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주도, 근로자도, 그리고 국가도 그 방지에 크게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직장의 관리책임자인 사용자는 안전보건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지키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재해운동 등 노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재해의 발생률은 줄어드는 경향에 있으나 아직도 우리들의 주변에서 언제 산업재해가 발생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안전보건에 관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이나, 만약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대해 사업주도, 근로자도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산재보험법」 상담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편집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하고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 사용자가 어떠한 보상의무를 부담하는가의 기본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받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서 각종의 보험급여를 받는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어느 재해가 과연 업무상인가, 아닌가. 어느 정도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인가. 누가 유족급여의 수급자인가 등의 보험급여의 운영에 대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본고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Q

산재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는?

A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1)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을 말한다.

(2)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
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3)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
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
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
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 등
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
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
를 말한다.

(4)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서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다만 빌주
자로부터 따로 제공받은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에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총공사실적”이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기성공사금액을 말한다.

(6)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7) “재해”라 함은 사고 또는 유해요인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사망, 장해 또는 질병을 말한다.

Q

업무상 사고란?

A

근로자의 사상(死傷)이 다음의 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어야 한다.

②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③ 근로자의 고의·자행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니어야 한다.

Q

업무상 질병이란?

A

(1) 근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근무기간, 폭로량 및 작업환경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③ 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④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①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 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② 부상의 원인, 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③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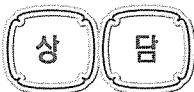
Q

작업시간중의 사고란?

A

(1) 근로자가 작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에 다음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그러나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작업



- ②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③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2) 근로자가 작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작업시간중 사고로 본다.

Q

작업시간외 사고란?

- A** (1) 근로자가 작업장내에서 작업시간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시간중 사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작업시간중 사고로 본다.

(2)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 정비 등을 포함한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그러나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작업장소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그러나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근로자의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고 있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사적 행위를 하고 있을 때
② 근로자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작업장내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 때
③ 근로자가 작업장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거나 출·퇴근중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4)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그러나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②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달되어 있지 아니할 것

Q

출장중 사고란?

- A** (1)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서 작업장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그러나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② 근로자의 사적 행위, 자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③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2)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출장중 사고로 인정한다.

(3)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작업장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외

근근로자)가 최초로 직무수행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출장중 사고로 본다.



행사중 사고란?

A (1) 근로자가 운동경기 · 야유회 · 등산 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그러나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사회통념상 행사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②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해 행사 당일을 통상의 출근으로 처리하는 등 사업주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를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고 인정될 것

③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행사중 사고를 준용한다.



기타 사고란?

A (1)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①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

②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③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작업시간중 사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그러나 업무와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사망의 추정이란?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불명하거나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행방불명 기타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불명한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으로 추정한다.

① 선박이 침몰, 전복,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 · 멸실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

②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

③ 위에서와 같이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